

第256回國會
(定期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 7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5年11月1日(火)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地方教育自治에 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2. 地方教育自治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근현 의원 대표발의)
3. 地方教育自治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구논회 의원 대표발의)
4. 地方教育自治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5. 地方教育自治에 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6. 地方教育自治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7. 地方教育自治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I (김영숙 의원 대표발의)
8. 地方教育自治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II(김영숙 의원 대표발의)
9. 教育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
10. 教育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대표발의)
11. 教育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12. 教育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13. 資格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
14.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

審査된案件

- 의사일정 상정의 건 4
1. 地方教育自治에 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백원우 · 서혜석 · 오영식 · 정성호 · 양승조 · 유승희 · 선병렬 · 강기정 · 이기우 · 문학진 · 임종인 · 노영민 · 이상민 · 김종률 · 김형주 · 정청래 · 박명광 · 우원식 · 김낙순 · 서갑원 · 조정식 · 정덕구 · 박찬석 · 홍창선 · 안민석 · 유시민 · 장향숙 · 최철국 의원 발의)(계속) 6
 2. 地方教育自治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근현 의원 대표발의)(이근현 · 김재원 · 이인기 · 김재경 · 정병국 · 엄호성 · 이재오 · 박창달 · 배일도 · 진수희 · 김영숙 의원 발의) 6
 3. 地方教育自治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구논회 의원 대표발의)(구논회 · 최인기 · 한병도 · 이강래 · 신기남 · 권선택 · 김명자 · 김희선 · 이미경 · 김춘진 · 노현송 · 박병석 · 김선미 · 김동철 · 오제세 · 주승용 · 김기석 · 김덕규 · 김태홍 · 장영달 · 윤원호 의원 발의) 6
 4. 地方教育自治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 · 장복심 · 조경태 · 임중석 · 우윤근 · 우원식 · 김태홍 · 오영식 · 이호웅 · 신중식 · 이은영 · 강혜숙 · 이시중 의원 발의) ...6
 5. 地方教育自治에 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이주호 · 김재경 · 김재원 · 박세환 · 박재완 · 배일도 · 윤건영 · 엄호성 · 이인기 · 이혜훈 · 정병국 · 허태열 의원 발의) 7
 6. 地方教育自治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박찬숙 · 배일도 · 김재원 · 단병호 · 엄호성 · 김영숙 · 나경원 · 장윤석 · 이성권 · 김애실 의원 발의) 7
 7. 地方教育自治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I (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영숙 · 김석준 · 김영선 · 김

애실·김재원·김충환·배일도·박계동·박순자·박창달·서상기·심재엽·안명옥·엄호성·이
경재·이군현·이병석·이윤성·이재오·임인배·황진하 의원 발의) 7

8.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Ⅱ(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영숙·고조흥·곽성문·김
명주·김문수·김석준·김애실·나경원·박계동·박순자·박세환·박진·박찬숙·배일도·신상
진·심재엽·심재철·안경률·엄호성·이군현·이계진·이명규·이방호·이병석·이진구·이재
오·이해봉·임인배·임태희·조성태·허천·황진하·고경화 의원 발의) 7

9. 教育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영숙·안경률·안명옥·이해봉·엄호성·
김재경·안상수·김충환·정병국·배일도·허천·지병문·김기현·정의화·이병석·황진하·진
수희·이군현 의원 발의) 7

10. 教育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대표발의)(김선미·장경수·제종길·김덕규·정성호·
최재성·최성·강기정·이인영·정장선·장향숙·서갑원·배기선·서혜석 의원 발의) 7

11. 教育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노영민·강혜숙·김효석·우제항·
이해봉·이종걸·이시중·김종률·유승희·류근찬·염동연·양형일·유재건 의원 발의) 7

12. 教育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최순영·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
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현애자 의원 발의) 7

13. 資格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최순영·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
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현애자 의원 발의) 7

14.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우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최시역**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주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 위원** 수능 부정 대책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대책과 관련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서 언론에서도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국회가 그동안 법안의 처리에 있어서 신속하지 못했던 점은 자기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수능 대책에 관련되어서는 정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수능 관련된 대책 법안을 작년 12월 말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지난 8월에 비로소 정부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해가지고 사실 법안의 병합 심의가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빨리 법안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작년 연말에 제출한 법안 내용을 8개월이나 있다가 제출하는 것은 행정 부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법안 제출하고 난 다음에 한 2개월 있다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정부 발의로 제출했는데 이때는 수능 방지 대책이 포함되지 않고 산학협력 전담교수제의 사안만 담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같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었기 때문에 2월에 충분히 수능 대책 법안을 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하지 않고 6개월이나 지난 후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직무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육부가 국회의 다른 온갖 의사일정은 다 제쳐 두고 긴급히 해 달라고 요구한 법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이 유감스럽게도 수능 방지 대책 법안이 아니고 오히려 교육부의 조직을 늘리고 격상시키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국회에다가 제발 좀 빨리해 달라고 하는 법안이 사실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정

말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담은 법안이 아니고 교육부의 조직을 늘리는 법안이었다는 것은 교육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때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반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반영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수능이나 학교 폭력 문제보다도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통과가 더 급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앞으로 크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할 것은, 지난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바로 직전인 11월에 법안을 제출해 가지고 사실 이 법안이 통과 안 되면 예산 편성조차 불가하다고 거의 국회를 협박하다시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꾸 교육부가 중요한 법안 제출을 미루거나 아니면 사실 더 중요한 법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조직 이기주의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하는 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지양되어야 되고 이런 점을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도 일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법을 심의하게 된 것은 다행스럽고요, 앞으로 저희 국회에서도 법안 안전을 잡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또 국민들이 정말 무엇을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가를 심도 있게 고민해 가지고 안전을 잡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고, 그 사이에 간사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출석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 수능 관련해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급히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방금 이주호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 법안을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지난해 수능 부정 있고 난 다음에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전과차단기를 하자니 지역 전과까지 차단되는 문제부터 해 가지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측면……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만약 오늘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그리고 법안심사소위에 가서…… 16일 국회 본회의

가 있는데 이때까지 통과되지 않게 되면 올해 수능 보는 학생들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행정절차상의 문제, 그다음에 좀 미진하게 진행된 부분이 다소 있지만 어쨌든 오늘 급히 상정되었는데 만약 이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게 되면 교육부는 물론이고 이 문제의 주 위원회인 우리 교육위원회 전체가 함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다소 늦은 감이 있고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오늘 대체토론을 적절히 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정부 제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8월 30일 국회에 제출되어서 8월 31일부로 교육위원회에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지하시다시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국정감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국정감사 마치고 또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나서 첫 번째 상임위원회가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하더라도 사실은 정기국회 때에는 중요한 예산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도록 국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실이나 수석전문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준비를 예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적으로 지금 정부 제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루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러나 이미 작년 말에 존경하는 이주호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법안을 제출하셨고 그것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 제출 법안을 기다리면서 소위원회에서 아직 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차에 이제 국민들의 걱정이 저희들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친 끝에 무엇보다도 정부 제출 법안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다루도록 급히 모든 절차를 예외적으로 밟고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대학 입시장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정부에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는 국회법의 정신에 따라서 이런 법안은 정기국

회 전에 제출하셔서 심의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하고 또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입장입니다.

이 점을 부총리께서는 유념해 주시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하신 것처럼 이러한 어려움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14분)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법 규정에 따라 먼저 몇 가지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

국회법 제59조에는 위원회는 일부개정법률안인 회부된 경우에 15일이 경과되어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제출된 의사일정 제8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 부족으로 의결이 있어야 상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93조의2제2항에는 정기회 기간 중에 위원회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에 올라와 있는 14건의 법률안 모두에 대해서 상정 여부를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대로 의사일정 제1항 백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4건의 법률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반가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해 오신 임해규 위원님이 출석해 계십니다. 그러면 임해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부천 원미갑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임해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의 선배님들을 만나 뵈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오고 싶었고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학문적으로는 그간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학문적으로는 그간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학문적으로는 그간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학문적으로는 그간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배워서 잘 하겠습니다. 만나 뵈어서 반갑고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임해규 위원님께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함께 수고해 주셨던 맹형규 위원님께서 저희 위원회를 떠나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되시고 또 저희들과 지냈던 좋은 추억이 계속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수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기회 좀 주십시오.

○**위원장 황우여** 예,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진수희 위원**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수능부정방지과 관련한 법안의 진행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 교육부 쪽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예가 이번뿐이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된 것에 관해서도 유감을 표시하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평준화하고 관련된 평준화의 효과, 그러니까 학습력과 평준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효과와 관련한 용역 과제 내용이 발표됐었습니다.

저는 그 용역 과제가 진행된 과정이나 활용된 자료나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현안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이전에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당 위원들께서는 요구한 대로 자료를 전달하고 야당의 우리 이주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

서는 보도가 나간 이후에 주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봉주 위원 여당에서 누가 받았어요?

○진수희 위원 신문 기사를 보면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실에서 요구한……

○유기홍 위원 신문 기사가 잘못됐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러면 기사가 잘못된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학회를 통해서 발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표 나가기 전에 가능하면 발표하는 그 문항은, 관심 있는 것들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이 저희한테 요청하셨던 것은 연구진에게 제공된 것과 똑같은 수준의 자료, 원 자료를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각각 입장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형태로, 어떤 수준에서 이것을 위원님들께 드려야 하는지는 많은 나라들의 다양한 사례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교육에 관해서는 특별히 법률을 따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나라의 사례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과 나중에 또 협의를 해 가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는, 저희가 어떤 경우에도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는 데 여야 위원을 차별화해서 드리거나 이런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사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그런 기사가 있었다면……

○진수희 위원 기사가 잘못됐다면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사실 법적인 판단은 이미 내려진 것 아닙니까? 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정기국회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법안, 특히 예산부수법안을 주로 다루고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것이 주된 임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지난 국감 이후에 교육정책과 관련한 현안이 또 많이 발생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이, 긴급현안에 대해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세션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경제교과서 오류 문제도 경제교과서에만 국한된 것인지, 다른 교과서에 그런 문제는 없는지 좀 일반화시켜서 전면 검토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도 저는 유아교육 부문에 대해서 대단히 미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수능이 곧 20여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부정 방지 대책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학기 중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교원평가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제가 방금 언급했었던 평준화 용역 과제에 관해서 용역 과제를 수행한 교수들 자신조차도 교육부가 제공한 자료에 대해서, 자료의 범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등 이렇게 현안이 많이 발생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응답할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유기홍 위원 위원장님, 진수희 위원님 발언하고 관계된 발언이라서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잠깐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늘 다 긴급한 법안을 다뤄야 되고 또 오늘 상임위를 오전에만 열도록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의견으로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한 3분으로 제한하면 어떨까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들, 한 3분씩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을 바꿔서 정봉주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 후에 이주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 진수희 위원님 발언 잘 들었는데요, 사실 관계를 확인하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당 위원님들 중 자료 제출을 신청한 사람들도 없고요,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가 늘 대충의 사실을 갖고 확인되지 않은 것 보도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상임위 내에서도 정말 그런 사실이 그렇게 진행됐는지, 그렇게 되었다면 문제지요. 어떻게 여당 위원들에게는 주고 야당 위원들에게는 안 줍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하고 질의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을 비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미 지난해 이주호 위원께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아니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떻다, 이것이 법률적 해석이 끝났다고 하셨는데 법률적 해석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법률 체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상임위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법률 체계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양당이 협의하고 같이 노력하는 것이 옳지 이것이…… 우리도 받지도 못했어요. 신문 보도 보고 알았던 말이에요.

그런 것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 위원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아마 교육부에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시려고 질의하신 것으로 압니다.

저도 이 문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사실 저희가 다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교육부가 9월에 ‘교육격차의 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라는 정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국감 이전에 벌써 이 자료를 계속 요구했는데 본 위원실에는 9월 15일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이 연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 위원회는 계속 요구했는데 9월 15일이나 되어서야 제출했고 여당 위원회는 훨씬 이전에 제출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언론 기자의 확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국회

에서 공방을 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가닥을 잡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교육 분야에서의 어떤 정보 공개 문제는 앞으로 정말 계속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고요. 저는 이미 교육정보공개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또 공청회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논의는 여야가 마음을 열고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 정봉주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를 진행하고 간사님들께서는 혹시 현안질의가 필요하신지 위원님들 의견을 미리 받으셔서, 다음 상임위 때 현안질의 시간을 가지려면 교육부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하고 의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1.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백원우 의원 대표발의)(백원우·서혜석·오영식·정성호·양승조·유승희·선병렬·강기정·이기우·문학진·임종인·노영민·이상민·김종률·김형주·정청래·박명광·우원식·김낙순·서갑원·조정식·정덕구·박찬석·홍창선·안민석·유시민·장향숙·최철국 의원 발의)(계속)

2.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이군현·김재원·이인기·김재경·정병국·엄호성·이재오·박창달·배일도·진수희·김영숙 의원 발의)

3.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구논회 의원 대표발의)(구논회·최인기·한병도·이강래·신기남·권선택·김명자·김희선·이미경·김춘진·노현송·박병석·김선미·김동철·오제세·주승용·김기석·김덕규·김태홍·장영달·윤원호 의원 발의)

4.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장복심·

조경태 · 임종석 · 우윤근 · 우원식 · 김태홍 · 오영식 · 이호용 · 신중식 · 이은영 · 강혜숙 · 이시중 의원 발의)

5.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이주호 의원 대표발의)(이주호 · 김재경 · 김재원 · 박세환 · 박재완 · 배일도 · 윤건영 · 엄호성 · 이인기 · 이혜훈 · 정병국 · 허태열 의원 발의)

6.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숙 의원 대표발의)(박찬숙 · 배일도 · 김재원 · 단병호 · 엄호성 · 김영숙 · 나경원 · 장윤석 · 이성권 · 김애실 의원 발의)

7.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I (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영숙 · 김석준 · 김영선 · 김애실 · 김재원 · 김충환 · 배일도 · 박계동 · 박순자 · 박창달 · 서상기 · 심재엽 · 안명옥 · 엄호성 · 이경재 · 이군현 · 이병석 · 이윤성 · 이재오 · 임인배 · 황진하 의원 발의)

8.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II (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영숙 · 고조홍 · 광성문 · 김명주 · 김문수 · 김석준 · 김애실 · 나경원 · 박계동 · 박순자 · 박세환 · 박진 · 박찬숙 · 배일도 · 신상진 · 심재엽 · 심재철 · 안경률 · 엄호성 · 이군현 · 이계진 · 이명규 · 이방호 · 이병석 · 이진구 · 이재오 · 이해봉 · 임인배 · 임태희 · 조성태 · 허천 · 황진하 · 고경화 의원 발의)

9. 教育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영숙 · 안경률 · 안명옥 · 이해봉 · 엄호성 · 김재경 · 안상수 · 김충환 · 정병국 · 배일도 · 허천 · 지병문 · 김기현 · 정의화 · 이병석 · 황진하 · 진수희 · 이군현 의원 발의)

10. 教育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대표발의)(김선미 · 장경수 · 제종길 · 김덕규 · 정성호 · 최재성 · 최성 · 강기정 · 이인영 · 정장선 · 장향숙 · 서갑원 · 배기선 · 서혜석 의원 발의)

11. 教育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 · 노영민 · 강혜숙 · 김효석 · 우제항 · 이해봉 · 이종걸 · 이시중 · 김종률 · 유승희 · 류근찬 · 염동연 · 양형일 · 유재건 의원 발의)

12. 教育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최순영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심상정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현애자 의원 발의)

13. 資格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최순영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심상정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현애자 의원 발의)

14.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시26분)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백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백원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에 이미 상정되어 대체토론 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후 계속 심사하도록 의결한 법률안입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중에 이군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논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영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박찬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선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정부 제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또한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1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8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I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991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실시되어서 지방교육자치를 담당하는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를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일선 교육현장의 여론과 실상을 수렴·반영하여 심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가 최종 의결기관이 아니어서 예산안, 조례안 등의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의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번복이 많고 정치적 입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로 교육위원회에서 당초 심의된 사업이 시·도의회에서 바뀌는 현상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중심의 구조는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이 훼손되고 심각한 행정의 비효율적 낭비로 교육현장 상황은 지역 간, 학교 간 불균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시·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교육청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보고 시·도위원회의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서 지방교육자치의 기능과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위원회의 의결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위원회와 시·도위원회의 이중행정 감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 문제가 있으므로 시·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도위원회의 감사·조사 시·도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조사 보고서를 시·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같음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 방법을 현재의 학교운영위원들의 간선에서 확대하여 학부모 전체와 학교 교직원 전체의 교육공동체 직선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교육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학예 관련 경력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였습니다.

교육이란 개인의 삶과 사회의 유지 및 발전의 근본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나 정치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육이 특정 정파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거나 비전문가들이 교육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교육의 본질이 크게 훼손될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가시적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경제 논리로 접근하게 된다면 교육에 대한 투자는 우선순위에서 소외될 것이며 그 직접적인 피해는 바로 한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교육위원 여러분!

수십 년간의 어려운 노력 끝에 결실을 보게 된 지방교육자치가 이제 뒷걸음치게 되고 말살되는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행정적·정치적 판단 이전에 학생·교원·학부모·지역사회 등의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교육을 향유할 수 있는 학교문화가 창조되도록 교육적 가치를 우선하여 마련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방교육자치의 목적과 기능을 살리며 우리나라 교육을 살릴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가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만족하는 지방교육자치체가 실천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II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도교육감이 보조기관인 부교육감을 임명할 때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즉, 시·도지사입니다—보조기관인 시·도부지사를 임명할 때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임명 절차를 종료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도지사과 지방교육자치의 장인 교육감은 각각 선거에 의해 당선되어 지방자치행정과 지방교육자치행정을 관장하고 있음에도 보조기관인 부시장·부지사와 부교육감에 대한 임명 절차의 차이로 인하여 지방교육자치행정보다 지방자치행정이 더 광범위하게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방교육자치행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교육감 임명을 시·도교육감이 추천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청하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개선하여 시·도교육감의 제청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 임명 절차를 종료하도록 하여 시·도교육감의 인사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인구 800만 명 이상, 학생 170만 명 이상인 시·도에서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경우 1명의 부교육감은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하여 지방교육자치의 특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교육위원 여러분!

시·도교육감이 인사행정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면 지방교육자치행정이 어려워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는 바로 행정적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교육의 전문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학생·교원·학부모·지역사회 및 지자체 등 교육공동체가 어우러질 때 행복한 교육은 실현되고 교육력이 제고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방교육자치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어 교육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은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기초체력 단련과 생활체육·평생체육 및 엘리트체육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학교체육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집단의 규범, 태도, 행

동 양식 등 문화·사회적 가치를 체험하게 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인성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시제도에 치중하고 있는 교육 현실로 인해 고등학교 2·3학년 중 남학생의 21%, 여학생의 31%가 체육 수업을 받지 않을 정도로 학교교육과정 운영에서 학교체육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2004년 체육과학연구원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체력이 40대 후반 성인의 체력보다 못하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는 학생들의 비만과 체력 저하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체육을 통해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바른 체격과 기초체력을 증진시키고 사회성과 협동성 및 인성교육 강화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강조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체육의 진흥 의무를 부여해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

체력은 국력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세계 속 경쟁력 있는 우수한 인재로 육성되어 세계 무대에서 역동적으로 활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기초체력이 튼실해야 합니다. 학교체육은 단순한 교과 교육으로서만 아니라 학생들을 건강한 체격과 체력 및 민주시민 정신을 함양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 과정인 것입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증진시키고 체계적인 학교체육 강화를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류충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이군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최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충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군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의 자격과 관련하여 안 제61조제2항에서는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 경력을 현행 5년보다 강화한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감의 자격기준과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자치제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에 대한 요청과 주민자치의 원칙이라는 민주적 정당성의 요청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는 결국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선거권과 관련하여 현행 선거제도는 간선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주민이 직접 선출토록 함으로써 현행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출제도에 따른 선거부정 방지와 주민 대표성의 확보가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현행 교육위원의 선출은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교육위원 선거구 단위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선거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논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선거인단의 구성 등과 관련한 안 제62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62조에서는 선거인단을 지역위원선거인, 교원선거인, 학부모선거인, 직원선거인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현행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출제도에 따른 선거부정 방지와 주민대표성 확보가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인단의 확대와 관련하여 이 개정안에 따를 때 주민직선 시의 유권자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 주민직선에 버금가는 규모이나 주민직선제에 비하여 현행 선거인단이 가졌던 주민대표성의 한계를 여전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거인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개정안에서는 선거인명부의 작성권자를 학교의 장,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의 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선거인단이 다양한 기준에 따라 구성되기 때문에 선거인명부의 작성주체를 여러 기관의 장으로 하여 금 작성토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나 여러 기관에서 선거인명부를 작성함에 따른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교육감의 임기를 정하는 과정에서 안 제23조에서는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인하여 2년 미만인 경우 이를 1차의 임기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과 같이 교육감의 임기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인해서 2년 미만인 경우라 하여 이를 1차 임기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보궐선거에 있어서 전임자의 잔임기간 또한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제5항이 되겠습니다.

이주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전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현행 시·도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서 시·도의회 내에 설치되는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존치하고 있어서 이중 심의·의결구조로 인해서 각종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시·도의회 내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를 두되 그 명칭을 ‘교육’위원회로 하고 제2항에서는 “교육위원회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법률로서 강제하고 있는 부분은 법과 조례와의 관계를 좀더 형평성을 검토해야 될 것

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교육감의 보궐선거는 1년 미만일 때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그 실시여부를 교육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결정하고 있으나 안 제126조제3항에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여부를 당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궐선거의 실시여부를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교육의 전문성이라든지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감안해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출방식 등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7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은 현행법 제19조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8조의2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을 배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중복 실시 등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예산안, 조례안의 최종 의결권이 지방의회에 있음에 비추어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로부터 완전 분리·독립된 의결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교육기관 등에 대한 감사 및 조사권의 배제는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임명 제청권자의 변경으로서 안 제33조제2항에서는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교육감의 제청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지사 임명제청권이 있는 반면에 부교육감의 임명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서 해당 시·도교육감으로 임명제청권자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교육행정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상황과 교원의 지방직화 등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미흡하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국가와의 가교역할을 하는 부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육감이 행사할 경우 국가정책과의 공조체계 약화가 우려될 측면도 제시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사람의 부교육감을 둘 경우 그 중 한 사람을 장학관으로 보임하자는 안 제33조제4항에 대해서는 실제 지금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아닌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부교육감을 보임토록 직접 규정할 경우에는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3장 교육의 진흥” 부분에는 남녀평등 교육의 증진이라든지 특수교육, 영재교육, 유아교육, 직업교육 등이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안 제22조의2에서는 학교체육이라는 부분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좀더 학교체육의 중요성을 감안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체육 진흥을 실현할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5항에서는 “국가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원수급 불균형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신설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학습자의 교육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차원의 규정이라 할지라도 교원수급 불균형의 최소화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은 교육의 이념, 교육의 기회균등 및 자주성 등을 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보다는 초·중등교육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변재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의 권리·의무주체 규정방식을 바꾸어서 현행 교육의 기회균등의 조항인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서 교육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국민”을 “국가”로 바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로 바꾸는 부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하는, 법체계상 측면이 재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교육기회의 차별금지요인으로서 국적·인종·교육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적을 차별금지요인의 하나로 추가할 경우 현행 교육기본법에서는 제1조부터 시작해서 제3조, 제8조제2항, 제10조, 제21조, 제26조에서 모든 국민 또는 국민이라고 호칭하고 있기 때문에 국적을 집어넣으면 법체계상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인종부분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라 한다면 대한민국 아동의 경우 인종의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중첩적인 조항으로 해석이 됩니다.

마지막, 차별금지 요인에 추가할 경우 국가는 교육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하는 법체계상, 조문상 문제점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최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기회균등 조항인 제4조에서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을 들고 있는바 여기에 경제적 지위나 “파산”을 추가하는 개정안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기회의 차별요인으로서 “파산”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4월 1일부터 발효되는데 여기에 의한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를 재건하기 위한 계기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파산 관련 입법례로서 의료법이라든지 경비업법, 평생교육법,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등에서는 각각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경비원 등이 된다는지 또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는지 하는 기회균등의 입장하고는 별개의 입장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에 비추어 볼 때 안 제4조에서 추가한 파산은 교육기회의 차별요인 중의 하나인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에 내포되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정부제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의 정보 공시에 관련한 안 제5조의2의 신설부분이 되었는데 이는 공시대상 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상정보 공개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시대상정보의 종류와 관련해서 정보생성의 기준시점이라든지 산출방법, 산출근거를 추가해서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학수학능력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강화와 관련해서 6쪽 수정의견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부정행위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1년간으로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험생이 미성년자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학입학전형자료의 일부라는 점을 감안해서 응시제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기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 13항 최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구기성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으로써 파산자 또는 파산자가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도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필요적 공인취소의 대상에서도 파산자를 제외하는 등 두 가지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법안과 같은 취지로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자에 대한 권리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총 79건의 법률안이 일괄적으로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현재 12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동 법안의 입법취지에 대해 살펴보면, 파산제도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의 총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도록 하고,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그 채무에 대하여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파산제도가 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파산자에 대한 법률상 차별적 대우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과중채무자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파산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동 법안의 입법취지는 위와 같은 파산제도에 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파산자에 대한 법률상 과도한 권리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동 법안의 입법취지는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파산이라는 상황은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이행 불가능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파산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제한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경제적 차원의 권리제한과 함께 일정한 사회적 신분의 획득 또는 유지의 제한도 당해 신분이 사회 활동에 있어서 특별한 신뢰 유지를 필요로 하거나 공적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제한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파산으로 인한 법률상 권리제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파산제도의 취지 및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각 사안별로 개별·구체적인 타당성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동시에 현행 법률상 파산자가 영위할 수 없는 사업이 약 100여 종에 달하고 파산자가 종사할 수 없는 직업이 약 150여 개인 상황인바, 각각의 규제들 사이에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현행 법률상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파산자에 대한 권리제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파산자의 민간자격 공인 제한 폐지 등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산자의 민간자격 공인 제한 폐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행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을 설치·관리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공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공인을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의 하나로 파산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공인은 민간에서 설치·관리하는 자격 중 그 검정기준, 방법 등이 국가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자격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자격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법 제27조는 이와 같은 공인된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를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된 민간자격은 국가 차원에서 그 신뢰성이 인정된 자격이라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경제적으로 변제 능력을 상실하여 일반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당해 자격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 유지가 곤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파산자가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상의 권리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민간자격관리자가 당해 자격을 공인받아 관리·운영하던 중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필요적으로 당해 공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성실하게 공인된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해 오던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파산의 원인이 민간자격의 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민간자격의 공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면책 등을 통하여 복권되는 경우에도 다시 당해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무리한 제재조치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성실한 자격관리자의 경우 외에 개별·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과 면책 결정은 상호 구분되는 별개의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면책 결정이 있을 것을 전제로 파산선고로 인한 제재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민간자격의 공인과 관련한 파산자에 대한 권리제한을 폐지하는 문제는 법률상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의견 수렴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 법률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개별 법률상 파산자 관련 권리제한을 전반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일괄적으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각 규제 사이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관련 법안 정비작업과 병행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양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위원님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구논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논회 위원** 이 문제는 지난번 백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대체토론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선거에 있어 직선제가 옳으나, 간선제가 옳으나, 또 의회 통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 등 본질적이고 가치 판단을 요하는 부분들은 이미 많이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질의보다는 교육감선거에 있어 직선제의 현실적인 문제점, 그리고 대안

은 없는지, 그리고 의회 통합 시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어떤 대안들을 찾아 빨리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하는 방향 쪽에서 질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체토론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의회 통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정부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 정부안의 중심적인 개정 요지는 교육의원선거제도에 있어서 광역 시·도별 대선거구제를 전제로 하고 1인 2기표방식, 그리고 교육의원과 지방의원을 2분의 1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를 넘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의회를 통합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 요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직선으로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는 지방의원선거와 교육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물론 별도로 선거하면 이것은 아마 국민적인 부담이 상당히 클 겁니다. 왜냐하면 6월 지방선거를 하고 또 8월 교육의원선거를 직선으로 한다는 것은 이중선거에 의한 국민적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동시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전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선거구제를 전제로 해서 1인 2기표방식으로 선출하는 방식이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하에서는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중앙선관위의 견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관위하고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선관위와는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대선거구제에 의해서 1인 2기표방식으로 하는 것이 실제 선거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집행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문제들을 지적해 왔습니다.

○**구논회 위원** 그러면 소선거구제 방식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 정부안대로 하면 8명 정도의 교육의원을 선출해야 되는데…… 서울시의원이 팔십몇명 되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교육의원은 몇십만 명의 유권자를 가지게 될 테고, 100만 명 넘는 곳도 생길 테고요. 그리고 같은 의회의 광역의원

들은 몇십만 명, 다시 말하면 소선거구제로 했을 때 대표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지금 국회의원선거구도 헌법재판소에서 대표성 문제 때문에 최대 최소의 비율을 1 대 3으로 규정을 했는데 과연 직선제로 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이 검토가 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금 지적하신 교육의원이 너무 많은 선거인단으로부터 선출되는 과잉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선관위에 의견을 물어본 것은, 이것은 시·도 의회 의원보다 한 10배 정도의 주민 대표성을 갖게 되는……

이것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의원의 예를 들면 비례대표라든가 또 소선거구제에 의한 지역구대표, 이렇게 다양하게 뽑아서 동일한 역할을 하는 의회 의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 비례대표의원은 일반 소선거구제로 당선된 의원보다 표의 가치로만 따진다면 한 10배 이상 되니까,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 위헌성 문제는 없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이고……

○**구논회 위원** 그것은 선관위에서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비례대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것이지 출마자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가능한데, 직접선거에 의한 방식은 어쨌든 대표성의 문제가 1 대 3의 범위를 벗어나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례대표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지 후보자한테 투표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위헌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저는 위헌 소지는 없다고 믿습니다마는, 다만 정치적으로 하는 역할과 대표성 문제를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선진국에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분리해서 교육위원을 뽑는 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운티에서 교육위원을 뽑을 때의 선거구하고 또 일반 지방의원을 뽑을 때 구를 서로 다르게 해서 뽑는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구논회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회 내에 한 상임위를 구성하는데 어느 의원은 10만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될 수 있고, 어느 의원은 100만 표의 유권자

를 가지는 그런 범위로 확정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선거구보다 조례를 제정하는 시의원선거구가 비례대표가 아닌 직접선거의 방식에 의해서 넓다고 하면 이것이 정치적으로도 받아들여지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교육의원은 현재 자격이 일반 국회의원 후보자보다 더 제한되고 하는 일이 교육에 한한 것으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구논회 위원이 지적하신 것 중 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일부는 구 단위로 뽑고 다른 교육의원들은 몇 개 구를 통합하여 뽑은 사람이 된다는 점들은 조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논회 위원** 그래서 기능은 교육과 학예 부분을 다루는 교육의원이지만 결국 법률적 지위는 지방의원입니다. 그렇지요?

법률적 지위는 지방의원인데 지방의원의 선거구가 국회의원의 선거구보다 직접선거 방식에 의해서 더 넓다고 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물론 정치적 문제를 벗어나서도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던 통합에 관한 문제는, 또 하나는 이런 것 같습니다.

국회는 교육위원의 전문성을 별도로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그런 정신이 배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정도 지방교육재정하고 지방일반재정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집행기구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행정이나 재정, 인사가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만 통합하는 것에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금 서로 하는 일이 다르고 대표성이 다른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통합하려다 보니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원천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위원회를 따로 떼어 놓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비교해 본

다면 그래도 일단 통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통합을 해 주는 것이……

우선, 첫째로는 현재 교육에 관한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 지금까지와 같은 방법으로 중앙정부가 한정된 자원만 갖고, 전국의 1만여 개 학교를 모두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원만 가지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정부들이 많은 능력을 갖고, 또 자치단체장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점도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두……

적어도 의회 차원에서는 교육에 관한 조례나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 하나로 되어야만 사실상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연계하는 것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만드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노회 위원** 하여튼 정리하겠습니다.

기초 단위, 다시 말하면 학교 단위라든지 지역 교육청 단위에 주민이 참여하는, 교육주체자들이 참여하는 교육자치가 좀더 숙성되고 완성된다고 하면 저는 통합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선제도 괜찮고, 그때 더 깊이 논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단위, 기초 단위의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기구 일원화라든지 교육감·교육의원 직선제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따 보충질의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희 위원** 한나라당의 진수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긴급현안질의 세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요구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 의제에 한해서만 현안질을 하는 것으로 아마 양당 간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유감을 표시하고요.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된 경제 교과서 오류 문제는 이념적인 편향성과 별도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류의 내용들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내용들도 들어 있고 해서 지금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문제도 학습력 제고라는 이름으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고 계신데 저는 학습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말 교원평가 못지않게 교과서 질의 문제를 우리가 전면 재검토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현재 검정 시스템이라든지 검정 교과서의 수익 배분 방식을 볼 때 교과서의 질을 올리는 것을 제도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감 때 검정 시스템 전반에 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없겠는가를 여쭙어 보았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계속하실 것입니까? 그것만 좀 확인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지난번 국감 때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의 지적도 있으셨고, 또 경제 교과서의 여러 가지 오류를 경제부처나 이런 데에서 지적해 온 것도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교과서가 우선 기본적으로 너무 축약형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일반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는 데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고, 교과서 검정 시스템 자체가 교과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작용하기에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희 위원**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는……

지금 사이버 가정학습으로 학생들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학습안내 자료가 나가고 있고 선생님들에게는 교수·학습정보센터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과서 자체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부터 제도를 고친다 해도 실제 학생들에게 좋은 책이 나오려면 아마 근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정도로 방대한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너무 느슨하게 할 일이 아니고, 우선 제도는 고쳐 나가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전자 교과서적 방법을 빨리 도입해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이버 가정학습이나 교수·학습정보센터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빨리 보완될 수 있도록 하면서 경

제 교과서 오류같이 명백히 잘못된 것들은 수시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내용을 보완하여 고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이고, 또 그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얼마나 성의를 갖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얼마든지 단축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다니까 그 계획에 관해서는 저희 방에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의 유아교육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현안질의 때 구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교육부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우선, 교육위원회 구성하고 관련해서 지금 여러 법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크게 분류를 해 보면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서 분리해서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법안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 관련 예·결산 심의라든지 조례 제정 시 교육위원회의 실질적인 영향력 발휘를 위해서 시·도의회에 통합되어야 된다고, 통합론과 분리론이 이렇게 크게 양분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어느 쪽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저희는 통합 쪽으로 가는 것이 교육의 전체적인 여건 개선이나 교육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수희 위원** 그런 입장이라면 반대 입장에 있는……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래서 정부가 당초 생각했던 것은 당선되는 교육 전문가 의원들로 위원회의 의장을 삼고 의석의 과반수가 넘는 구성의 상임위원회를 하면 확보되지 않겠느냐……

○**진수희 위원** 자, 그렇게 되면 아까 구논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대표성의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일반의원의 과소 대표성과 교육위원의 과다 대표성 문제는 아까 부총리께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유권해석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별도의 선거구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선거구 확정하는 데 있어서도 혼란이 상당히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저희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지적하는 각 점마다 답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다른 많은 나라의 예에서처럼 궁극적으로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위원회 2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통합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표의 등가성 문제라든가 과잉 대표성 문제 등을 최대한 좁히는 쪽으로 방안을 찾아보되 궁극적으로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교육 여건에서 통합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예산과 조례 등을 통해서 교육에 관한 여건 개선, 또 교육의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진수희 위원** 어쨌든 저는 정책적인 선택이 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이 무엇이겠는지 고민을 깊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짚막한 것을 잠깐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게 될 경우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과 단체장이 교육정책에 관해서 의견이 충돌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상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금 존경하는 백원우 의원님 안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간에 이런 문제들을 조율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그 이전에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같은 시기에 주민직선으로 뽑게 되면 양 선거에서 교육에 관한 정책이 중요한 정책이슈로 거론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정책적인 연대나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조례나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조율은 결국 지방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점에서도 교육 문제를 다루는 통합위원회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수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봉주 위원입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제34조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규정을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있지요? 조직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정봉주 위원 2년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2년의 효과가 있나요? 남학생들은 5년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군 복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봉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정행위는 일벌백계의 효과를 내야 되기는 하지만,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5년이란 말이에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최대 2년 인데요. 최대 2년까지면 18살에 졸업한다고 치고 계산해 보면, 군 입대 전에 대학입학시험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생각해서 저희가 최대 2년으로 제한을 한 것입니다.

○정봉주 위원 그런데 최대 2년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2년으로 해 놓고 2년 적용 사례가 없는 실효성 없는 법률조항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여학생들은 2년 하고 남학생들은 1년 반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렇게는 할 수 없겠지요.

○정봉주 위원 뭘 보시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금 정부가 생각한 안은 단순부정은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면 되고, 작년 수능에서 봤듯이 기계나 헨

드폰 등을 이용해서 몇 사람이 조직적으로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정도 추가적으로 시험을 못 보게 하는 징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범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작년에도 하고 올해에도 또 똑같은 범위를 범했을 경우에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봐서 2년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정봉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규정·판단, 이런 게 자의적으로 갈 위험성이 있고요.

그래서 당해 시험 무효화, 그다음에 1년으로 이 포맷 자체를 단순화해 놓고 그것을 갖고 실효성 있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년이 됐는데 군 복무 이전에 시험을 보게 하기 위해서 1년 3개월, 1년 6개월로 한다면 하게 되면 법 자체의 적합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2년으로 한 그 고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이와 유사한 다른 국가자격시험 법률들은……

○정봉주 위원 그것은 제가 봤어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대개 3년 내지 5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학입학 시험이기 때문에 군 입대 연령이 걸려서 최대로 2년으로 하고……

○정봉주 위원 지금 교육부에서 제출한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얘기할 때 든 게 공무원임용시험령이거든요. 그다음에 공인회계사법이라고요.

공인회계사법 같은 경우에는 이 나이 때 보는 것이 아니지요. 그다음 공무원임용시험령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군대를 갔다 와서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에는 법률 자체의 형평성은 있지만 현실 환경의 형평성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도 일단 미성년자인데다 이게 대학입학 전형자료로서의 결정성은 높지만 입학 전형자료의 일부예요. 그래서 1년 정도로 제한을 해도 대단히 중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존경하는 이주호 의원은 사회봉사 이후에 자격 제한을 풀자고 하는 대체징계 정도의 성격을 띤 법률까지도 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부

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사회적 분노와 함께 징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공감대는 높지만 자칫 실효성 없는 2년을 만들어 놓고 결국 국민들에게 징계의 강도가 높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2년이 적용되면 실제로 5년 적용의 효과를 낳고, 누범인 경우에는 첫해의 징계가 적절치 않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1년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것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세밀하게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교육부는 1년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않나, 이런 얘기인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반복해서 그런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저희……

○**정봉주 위원** 반복해서 하면 그다음에 1년 하면 군대 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런데 우리 부의 입장에서는—행정부의 입장이라는 합나다마는—종합적인 수능부정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이 이미 발표되어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크게 문제가 없으면 지금보다 더 완화하는 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봉주 위원** 이게 현행법 제34조에 있는 내용보다도 많이 강화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1년으로 가도 국민 일반에의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1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의 말씀과……

그다음에 제5조의2에 보면 대학 정보 공시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건은 존경하는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정보공개법하고 연계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은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과 연계해서 병합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 정보공개법하고 같이 이 법안을 여기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11월 16일까지 통과되기 힘들습니다. 11월 16일이라고 하는 현실적 제한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미리 토의하는 것도 사실은 지탄받을 일인데 여기에서 이것까지 해 가지고 16일에조차도 통과를 못 시킨다, 그러면 저는 비

판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해서 제5조의2는 차후에 이주호 의원께서 발의한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아울러서 제가 전문위원들하고 죽 검토를 해봤는데,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사실적 행위로 동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법 규정이 강화되면 과연 어느 것이 부정행위냐라고 하면서 부정행위를 적발당한 학생들이 법에다 호소하거나 혹은 법률적 규정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행위를 무엇이라고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과 이번 11월 23일 시행되는 수능시험을 앞두고 교육부에서는 시험감독 들어가는 분들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교육을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시켜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시행령에 부정행위란 과연 무엇이나, 수능에서의 부정행위 유형, 이런 것을 적시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이르다고 보고요.

이번 수능을 앞두고 감독관들에 대해서 부정행위의 유형과 가능성, 감독 내용,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오후에 대구에서 열리는 교육감 회의에 가서 이 문제하고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지적했던 APEC 반대 계기수업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교육감들에게 촉구를 할 생각입니다.

○**정봉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부총리 말씀에서 계기교육, 어저께 대정부질문 할 때 김기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교조 계기수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시·도교육감 회의에 가서 촉구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촉구할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계기수업

이 지금……

○**김영숙 위원**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얘기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아니, 그런……

○**김영숙 위원** 파악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도교육감이 모이시니까 그 안에서 모든 학무라든가 장학이라든가 그 총책을…… 교육부에 책임이 있는데, 시·도교육감 회의를 하니까 교육감께 그러한 계기수업을 하는 실상을 전부 다 파악하도록 저는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논회 위원께서 “국회 교육위원은 교육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차라리 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았었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우여 위원장, 정봉주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께서 지난 10월 2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특별강연에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도교육위원회를 광역의회에 통합하고, 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동시 실시하고, 또 시·도교육감이 교육부지사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사실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시·도지사……

○**김영숙 위원** 사실인가 아닌가만 말씀하세요. 부연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제 진의가 잘못 전달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래서 그 진의를 옳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뜻은 시·도지사…… 교육감은 같은 시기에 같이 선거하면 정책적으로 잘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하는 역할 면에서 보면……

○**김영숙 위원** 뭐가 연계가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8명을 뽑아야 되는데, 동시에 하는 것이 뭐가 연계가 됩니까? 뭐가 연계가 되는지 성과를 얘기해 보세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아니요, 지금 시·도지사들이 주민들에 의해 뽑혀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모든 지방정치를 하는데 법정교부금 외에 실제 여력이 있으면서도 교육에 관한 투자를 게을리하고, 그런 것들이 아무 정치적인 문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에 관한 정책 의지를 제대로 가진 사람들이 시·도지사로 당선될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저는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력에 있어 조금 소홀하다 이 말씀인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교육비가 지방교육비의 19.8%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80.2% 정도의 지방교육예산을, 지금 보면 지방의회에서 전부 다 예·결산안을 안고 있어요. 19.8% 때문에 80.2%는 안 해요. 이것도 부당하다고 한 게……

제 법안을 잘 보십시오. 오늘 제안설명도 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와 병행해서 전부 같이 선거를 치름으로 인해서 교육의원 후보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정치적 성향이나 이슈에 가려져서 투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방의회가 교육을 자기들의 고유한 업무의 하나로 인식하고 주민들의 교육복지를 위해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심의하고 조례나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006년 12월 3일까지 한시적 법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 재원은……

○**김영숙 위원** 그것이 제대로 되어서 의무교육비, 중등교원봉급을 국가에서 대고 그동안 대던 것으로 나머지 교육환경개선비 19.8%를 대면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위원들이…… 교육위원들은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표로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교육 현안을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심의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자성, 자주성, 정

치적 중립성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도의회에 같이 통합시키면 어떻게 정치적인 중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되겠습니까?

자주성이라는 것은 헌법 제31조에 보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부총리께서는 자주라는 의미를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교육의 자주성이라고 해서 교육 내용, 교육 기구 이런 것이 교육자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육의 자주성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이런 것이 교육감이 시장 밑에 부지사로 들어가게 되면…… 옛날 5·16때 교육감이 서울시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법안은 후퇴하는 법이지 교육의 수장으로서 아주 옛날로 후퇴하는 법안을, 그런 발언을 교육청에 가서 특별 강연으로 했다는 것은 편향성……

지금 의원들 법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법안에 대해서 개인적 편견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교육기본법 제6조인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자주성은……

○김영숙 위원 안 하다고 말하면 성립되었습니까? 헌법에도 다 나와 있는데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김영숙 위원님은 김영숙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시고 저는……

○김영숙 위원 의견이 아닙니다. 저는 법안에 근거해 가지고 하는 말인데 왜 제 개인 의견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질의하시니까 저는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교육부지사 이야기로 전달된 것에 관해서는 제가 표현을 불분명하게 했다면 진의가 잘못……

○김영숙 위원 그러면 교육감이 부지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부지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교육감이 부지사가 되는 것……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김영숙 위원 알았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김영숙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영숙 위원 아니 그 발언이 언론에 나왔어요. 나온 것에 대해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금 정부가 지지하는 법안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영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대리 정봉주 김영숙 위원님 시간 다 되었으니까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시간 다 되었어요?

○위원장대리 정봉주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주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 위원 수능과 관련한 정부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수능 관련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학습윤리를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윤리의식을 확립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지에는 동감하고 사실 저도 그런 취지에서 법안을 먼저 냈습니다만, 문제는 어떠한 방식을 택할 것이냐를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이라는 시험도 교육과정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과의 형평을 따지기에 앞서 아이들한테 처벌할 때도 교육적인 처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문제는 수능 같은 경우 사실 국가의 책임도 상당히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를 소홀히 했든지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벌의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정부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일단 최대 2년으로 해 놓고 단서조항에 다만 경미한 부정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약화시킬 수 있다고 되

어 있는데 사실 부정행위 중에서 어떤 것이 경미하고 어떤 것이 경미하지 않은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특히 아이들에게 윤리의식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사실 작은 도둑은 괜찮고 큰 도둑은 문제다 이런 식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형량을 길게 해 놓고 경미한 경우에 감해 주겠다는 방식은 정말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해연도는 정지를 시키고 다음 해에 시험을 치르기 전에 사회봉사나 인성교육을 하는 것으로 법안을 냈었는데요, 내일 법안소위에서 자세한 토론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취지가 이 법을 개정할 때 충분히 담겨야 된다고 강조하고요.

또 한 가지 방식을 택할 때 걱정해야 될 것은 지난번 수능 부정 사태 때도 경험했습니다마는 부정행위자를 목격하고도 감독하시는 선생님들이 지적을 잘 못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아이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온정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형량을 강화해 놓으면 그런 문제가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들이 감독을 하게 되는데 형량까지 2년으로 되어 있으면 더 온정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국민적인 여론이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입장과 기본적으로 수능관리 체제에 있어서 감독이 부실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법안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에 상당히 오랫동안…… 교육을 잘못시킨 교육 당국에 가장 큰 책임이 있겠습니까마는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나 작고 큰 여러 가지의 시험을 볼 때 부정을 어느 정도 눈감아 주는 것이 관행화되었거나 그런 문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작년과 같은 그런 대규모의 부정행위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의 쓰라린 희생의 경험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문화를 고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험인 수능시험에 있어서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것을 통해서 학교 당국에서 평상시에 학생

들에게 그런 것을 좀더 강조하고 학교에서도 뭔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도록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면도 일리가 있습니다. 법이 너무 무서우면 쓰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현재는 이 법이 무서워서 쓰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저희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문화가 바뀔 때까지는 강한 징벌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고 저희가 이렇게 2년이라고 한 것은 아까 답변드린 그런 측면하고 98년 2월에 시행되던 법에 2년을 최대 징벌기간으로 하는 조항이 있어서……

○**이주호 위원** 그 조항은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런 점들을 종합 고려했습니다.

○**이주호 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고민하셔서 내일 법안소위를 하니까 정리된 의견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이주호 위원** 다음으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를 하면, 변재일 의원님의 안은 외국인자녀들에 대한 교육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교육기본법에 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교육기본법에 이 원칙을 넣게 되면 외국인자녀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이 다 뒤따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법을 바꿔놓고 외국인자녀들에 대한 무상교육을 일시에 다 할 것인지, 그다음에 외국인학교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불법체류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각종의 정책들이 여기에 뒤따라야 되거든요.

이런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또 교육에 대해서만 이렇게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한다면 외국인자녀들에 대한 인권문제라든지 기본권 문제가 뒤따르지 않습니까? 그런 다른 기본권들은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기본법에 담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포괄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선미 의원의 개정안도 비슷한 취지인데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원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을 교육기본법에 담는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사실 정책적인 준비가 안 된 상황

에서 담았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영숙 의원님의 기초체력에 대한 내용을 기본법에 담는 것도 27조에 이미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위개념이 있는데 하위개념을 별도로 조항에 담을 필요가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기본법은 그야말로 기본적인 사항이고 여기에 한번 담기면 다른 정책들이 다 수반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교육기본법에는 지적하신 대로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정해지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실정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권한들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이주호 위원님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까 변재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6조2항에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는 근거조문이 있기 때문에 기본법에 별도로 안 넣어도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주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주 이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가지 법안에 대해서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주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민주노동당 최순영입니다.

저는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전날 저녁 7시에 안전 상정을 통보해 온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비교접단체 같은 경우에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전날 저녁 7시에 안전 상정을 통보해 온다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지속된다면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부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 부정행위에 있어서 저도…… 앞에 서 정봉주 위원, 이주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

만 사실 수능 문제만큼은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문제거든요. 사실 입시제도의 문제로 봐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교육의 일환으로서 교육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응시제한을 2년으로 한다면 군복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년으로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학생들한테 꼭 어떤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사회봉사명령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재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도 하여튼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응시제한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2년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으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부에서도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정보공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에 대학별 취업률을 발표한 사실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최순영 위원 그런데 조사방식이 무엇이였습니까? 조사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것인데……

○최순영 위원 인터넷에 대학취업률 부풀리기가 극심하다, 신빙성이 없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한 해 동안 20% 취업률이 갑자기 올라갔다는 것이지요. 아르바이트하는 경우에도 취업자로 처리하는 그런 각종 편법과 조작이 난무했다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정봉주 간사, 황우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대학 취업률은 각 학교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가능하면 취업률을 높이도록 발표를 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해 보려다가 보니까 지금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정보공시제도를 도입해서 의무조항을 두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교육개발원이 각 대학이 발표한 취업률을 다시

심사해서 그런 것들을 통일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취업률 같은 통계들을 통일시키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 그 근거에 의해서 제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이런 잘못된 정보의 결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간에 서열화와 격차 문제가 매우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방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여러 부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 이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심각해질 수 있고 대학 간에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5조의2제10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집어넣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4호의 “졸업 후의 진로 및 취업 현황”은 삭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급하게 결정을 서둘러야 할 부분도 아니고 또 이주호 의원이 정보공개 법률안을 발의해서 목요일에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신중하게 나중에 이것과 같이 병합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것은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하여튼 수능 부정에 대해서 급한 것은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어차피 우리가 법 하나를 제정이나 개정할 때 신중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발의하였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기초부터 교육자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 학교 단위의 자치부터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바로서지 않고 교육자치가 되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지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지방행정체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서 2010년 지방선거부터 도입하는 안에 대해서 조율 중에 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찰자치제와 이런 것들을 미뤄 놓

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자치 개편 논의에 있어서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자치가 매우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시기를 늦추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법을 지금 만들더라도 개정된 법에 의하여 교육감들의 경우 시·도지사과 함께 선거를 하는 것은 기존의 방법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의 법정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2010년으로 늦춰져서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 여야 간에 지자체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시킨다든가 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교육자치도 그 틀에 따라서 다시 바뀌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을 가지고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방법 및 교육위원회 통합 문제가 이번 국회에서 한번 심의되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용은 대부분의 경우 2010년에 하기 때문이에요.

○최순영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보충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 위원 교육위원회의 위상 문제를 가지고 독립 의결기구화 할 것이냐 아니면 시·도 의회에 통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교육부장관의 입장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기구인 시·도청하고 별도로 교육청이 분리되어 있는데 현재 준의결기구라고 볼 수 있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위원회를 없애고 만약에 시·도의 교육위원회로 통합해서, 행정기구는 2개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의회기구는 하나로 되었을 때 교육부에서 예상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본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2개 의회를 하나로 통합할 때에 따르는 선거 방법 또 위원회 구성에서 표의 등가성 문제 이런 정치적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완전히 분리해서 운영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선진국가…… 이렇게까지 분리해서 운영하는 나라는 없고 많은 경우에 잘 연계되거나 또는 완전히 통합해서 운영하거나 하고 있고, 많은 나라의 경험이 그렇게 해야만 자치제도의 본질에 맞고 교육이 현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도 교육에 대해서 책무성을 가지고 해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맞고, 또 실질적으로 교육 여건 환경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잘 조율을 해서 두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2개로 갈라져서 생기는 여러 가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간의 조율의 문제도 의회와 위원회가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오히려 그런 점을 보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군현 위원 지금 선진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교육부장관께서 미국을 정확히 아십니까? 미국에 지방교육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주별로 서로 다른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미국 전체에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것을 잘 모르시면서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에는 교육구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역교육청을 School District라고 합니다. School District는 숫자가 굉장히 많다가 많이 줄어서 지금 미국 전체 50개 주 합치면 한 1만 5000개 정도 됩니다. 그 1만 5000개의 School District마다, 즉 지역교육청마다 독립된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 말로 혹시 뭐라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역학교 교육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군현 위원 예, 우리로 하면 지역교육청에 가까운데 사실 지역교육정보다는 단위가 더 작은

단위입니다. 우리는 지역교육청이 한 182개 시·군·구에 있지 않습니까? 시·도 교육청이 16개 있는 반면에 미국의 50개 주 교육청, 우리의 시·도 교육청에 해당하는 게 50개지만 우리의 지역교육청과 비슷한 수준의 지역교육청이라고 할 수 있는 School District가 1만 5000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교육정보다 더 단위가 작은 이 1만 5000개가 독립된 교육위원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Board Member라고 합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이군현 위원 그리고 주의 교육청을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이라고 하고 그 주 교육청의 교육위원회를……

지금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 가지고,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이 있으면 State Board of Education, 즉 주 단위의 교육위원회가 50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만 5000개의 우리 지역교육청과 거의 유사한, 그러나 더 작은 단위지요, 거기 교육위원회의 Board Member들이 그 지역의 주요한 교육정책을 전부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 교육장은 똑같이 다 Superintendent라고 합니다.

다만 주의 교육장, 즉 우리 교육감에 해당하는 사람은 State Superintendent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역할은 뭐냐 하면 chief administrator라고 해 가지고 지역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주 행정업무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역교육위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지금 다 예측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전혀 미국의 시스템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 점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Local Education District를 가지고……

○이군현 위원 Local Education District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School District라고 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기본적으로는 미국으로 따지면 주 단위에서의 경우처럼 우리의 16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위원회 통합 문제도 같이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주 의회에서 교육 관련 예산 의결이나 법률을 바로 제·개정

하고……

○이군현 위원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 단위에서는 State Board of Education, 즉 주 단위의 교육위원회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고 그것을……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것은 집행 기관 아닙니까?

○이군현 위원 집행을 주 교육청에서 한다니까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집행 기관이 State Board of Education이고……

○이군현 위원 집행 기관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주 의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위원 선출은 주지사가 임명하는 주가……

○이군현 위원 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35개 주고, 일부만 임명하는 주가 2개 주가 있고 주민이 선출하는 주는 11개 주이고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미국을……

○이군현 위원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지사가 주 교육감을 임명해서 선정하는 주가 있고, 그러나 많은 주가 주민이 직접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그 선출된 교육위원이 교육감을 옛날 우리 80년대에 잠시 있었던 그런 식으로 간선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50개 주가 다 일정하게 획일화되어 있지 않지만 50개 주 중에 많은 주가 독립된 의결기구 형태를 갖고 있고, 독립된 의결기구를 갖고 있는 것이 State Board of Education이라니까요. 거기서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면 State Superintendent가 주 단위의 교육청장, 우리로 말하면 교육감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그것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통합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했을 때 우리 교육부장관께서 대부분의 선진국, 교육이든 일반 행정이든 지자체가 가장 독립되어 있는 나라가 서구권에서는 미국인데 그 나라가 그렇지 않다고요. 아닌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금 지적하신 것은 미국의 학교구의 이야기이고, 학교구의 이야기는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교육자치와 연결된 문제이고, 우리는 지금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교육자치를 하고 있는데 그 광역자치단체가 미국 주의 경우 의결기관은 주 의회이고 집행기관은 주지사와 주 교육위원회가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집행하고 있고, 그 교육위원을 뽑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지만 대부분 35개의 주가 주지사가 임명하거나 또는 주 상원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고 있고……

○이군현 위원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주 단위의 교육위원……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소위에서 서로 확인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문서를 가지고 확인한 것입니다.

○이군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 단위에서 주지사가 검찰의 추천을 받는든지 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교육위원에 추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주민이 직선해서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주 단위의, 우리의 광역시 단위의 교육위원회가 중요한 정책을 의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니다니까요. 분명히 의결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집행은 주 단위 교육청의 교육감이 하는 것이라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교육위원도 뽑고 교육감도 뽑고 다양한 방법으로 뽑지만, 어떤 경우에도 현재 우리처럼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이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상당히 제한해서 실제로 교육에 관한 것을 재정 지원하는 경우에도 마치 시혜적으로 주는 식으로 정치적으로 생색을 내는 방법으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정책적으로 잘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군현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미국에서 지금 교육위원회를 주지사가 일부 임명하기

도 하고 추천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주는 직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독립 의결기구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준의결기구가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그것이 어느 것이 낫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육행정학계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준의결기구화, 즉 조례 제정권과 예산에 대한 의결권이 없는 교육위원회를 완전히 지자체에 합쳤을 때에 그것의 제도가 낫다 또는 완전 독립기구화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도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낫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행정학 책이나 학계에서는 합의를 못 보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도 준의결기구가 되어 있는 것을 없애고 합치는 게 낫다든지 그런 의견을 우리가 가지는 것은 굉장히…… 우리 상황이 미국하고 또 다르고 우리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 그쪽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교육위원회를 독립 의결기구화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장관께서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고 의견을 물었는데 묻는 과정에서, 광역시 단위의 교육위원회가 선진국은 거의 일반 행정에 통합되어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기에 제가 당장 이의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합치느냐, 독립 의결기구화에 대해서는 제 의견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황우여** 이제 위원님들의 주된 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여야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구논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논회 위원** 정체나 의회체계 이런 것들은 나라마다 전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가 발전되어 있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코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면 단위 정도에서 소득세율이라든지 법인세율

까지를 다 결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주민 참여가 보장된다면 직선이 되었던 임명이 되었던 아니면 주민한테 넘겨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체계를 좀더 감안하는 정책적인 판단 그리고 입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차피 자료 가지고 제시겠지만 2001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전원 재판부 판결문인데요,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균 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그러나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인구 편차 상하 33.31%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전의 95년도 판결을 보면 “국회는 구체적인 선거제도를 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다른 정책적 목표도 고려할 수 있지만 적어도 선거구의 확정에는 인구비례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고요, “국회가 통상 고려할 수 있는 제반 사정, 즉 여러 가지 비인구적 요소를 모두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생긴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야 한다.” 이런 구절들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통합이나 분리나 하는 문제는, 행정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지금 교육과 일반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회 통합을 논의하려면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야 되고 그리고 기초 단위의 교육자치, 학교 단위의 교육자치가 적어도 동시에 아니면 선행적으로 추진된 다음에 의회 통합 같은 것을 논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직선제안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직선제로 바뀌어도 선거를 할 수 있는 지역은 강원도 한 곳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경과적 과정으로 선거

인단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현재의 부정적 측면들을 보완해서 한 4~5년 정도 운영하고, 2010년 지방선거 때 동시선거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모색하고 연구해서 직선제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현행법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들의 법정 임기를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강원도 교육감을 제외하고는 내년도에 예정된 지자체 선거에 같이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도기에 부칙으로 그때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안대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제 생각은 현재의 제한된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에 선거인단의 범위를 좀 확대하고, 특히 선거인단 속에 유아교육을 맡고 있는 책임자들, 유치원 선생이나 학부모들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소한 꼭 보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논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최순영입니다.

교육감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위원은 다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교육위원은 가능하면 내년에 지방의원 선거에 함께 통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교육감·교육위원 선출 과정에서 직선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교육위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영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왜냐하면 직선제로 가게 되면 교육전문가로 하되, 현행법에서는 그 전문가를 강단에서 반드시 가르친 사람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교육행정이라든가 교육에 관한 많은 일을 해 본 사람들 중에서 주민의 심판을 받아서 뽑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순영 위원 예, 그리고 사실 지금 교육공무원의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것도 철폐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 문제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끝으로 교육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교육감, 그다음에 교육청의 권한 조정이 지역 간의 교육 불균형 해소 방안과 교육격차 방지 등과 함께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글썄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그것도 중요한 문제니까 다른 계체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영 위원 그래서 오히려 교육자치법 개정할 때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 회의에서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내용 모두를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임해규 위원님은 시종일관 우리 위원회 질의 내용을 자리를 전혀 뜨시지도 않고 봐 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좋은 질의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이주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만 이 법률안에 관련된 내용인 백원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이 이미 공청회를 거친 바 있으므로 공청회 개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백원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4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 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입시 부정 대비책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사전 대
 비 부분을 중요시하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
 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교육부 직원들은 회의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자리에 앉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비롯
 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 | | | |
|-------|-------|-------|-------|
| 구 논 회 | 김 영 숙 | 백 원 우 | 유 기 흥 |
| 이 균 현 | 이 인 영 | 이 주 호 | 임 태 희 |
| 임 해 규 | 정 봉 주 | 조 배 숙 | 지 병 문 |
| 진 수 희 | 최 순 영 | 최 재 성 | 황 우 여 |

○청가 위원(2인)

권 철 현 한 화 갑

○출석 전문위원

| | | | |
|-------------|---|---|---|
| 수 석 전 문 위 원 | 류 | 충 | 현 |
| 전문위원직무대리 | 구 | 기 | 성 |

○정부측 참석자

교육인적자원부

| | | | |
|-----------------|---|---|---|
| 부 총 리 | 김 | 진 | 표 |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김 | 영 | 식 |
| 차 관 보 | 김 | 광 | 조 |
| 정책홍보관리실장 | 정 | 영 | 선 |
| 학 교 정 책 국 장 | 류 | 영 | 국 |
| 지 방 교 육 지 원 국 장 | 박 | 경 | 재 |
| 평 생 학 습 국 장 | 하 | 갑 | 래 |
| 대 학 지 원 국 장 | 김 | 화 | 진 |
| 대학혁신추진단장 | 곽 | 창 | 신 |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 사임위원 | 보임위원 | 교섭단체 | 연월일 |
|------|------|------|------------|
| 맹형규 | 임해규 | 한나라당 | 2005.10.31 |

○의안 회부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영
 숙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1 김영숙·고조흥·곽성문·김명
 주·김문수·김석준·김애실·나경원·박계
 동·박순자·박세환·박진·박찬숙·배일
 도·신상진·심재엽·심재철·안경률·엄호
 성·이균현·이계진·이명규·이방호·이병
 석·이진구·이재오·이해봉·임인배·임태
 희·조성태·허천·황진하·고경화 의원 발
 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
 표발의)

(2005. 10. 21 이주호·고경화·김영덕·김애
 실·김재경·나경원·박세환·박재완·박찬
 숙·박형준·배일도·윤건영·엄호성·이명
 규·임태희·진수희 의원 발의)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1 이주호·고경화·김영덕·김애
 실·김재경·나경원·박세환·박재완·박찬
 숙·박형준·배일도·신상진·윤건영·엄호
 성·이명규·임태희·진수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25일 회부됨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5 정봉주·이인영·최재성·백원
 우·김효석·조배숙·구논회·지병문·김영
 주·김홍일·최순영·우상호·오영식·이미
 경 의원 발의)

10월 26일 회부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5 김선미·신학용·김동철·김우
 남·오영식·김재운·한광원·이영호·윤원
 호·백원우·김현미·제종길 의원 발의)

10월 27일 회부됨

韓國私學振興財團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 의
 원 대표발의)

(2005. 10. 26 정봉주·이인영·최재성·김효
 석·조배숙·구논회·지병문·김영주·김홍
 일·우상호·오영식·이미경 의원 발의)

10월 27일 회부됨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 2005. 10. 27 정부 제출)

이상 2건 10월 31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독서문화진흥법안(박형준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6 박형준 · 엄호성 · 이해봉 · 이성권 · 김명주 · 김기현 · 정문현 · 권영세 · 안홍준 · 안상수 · 이인기 · 이주호 · 정병국 · 배일도 의원 발의)

10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구도시재개발 특별법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7 신상진 · 박형준 · 이규택 · 이계경 · 김성조 · 황진하 · 한선교 · 이상득 · 정희수 · 박계동 · 유기준 · 엄호성 · 주호영 · 권영세 · 정병국 · 안상수 · 최연희 · 나경원 · 이진구 · 박승환 의원 발의)

10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